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03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 안상훈 · 임이자 · 유용원

이성권 · 조은희 · 권영진

백종헌 · 김미애 · 박성훈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 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생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②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		
	<u> भ</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